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3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모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되어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 * 자율주행, UAM, PM, 플랫폼(예. 공유차량, DRT), 허브센터 등

2. 지원대상

- (미래모빌리티형)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 * 개발지역이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과 관련된 경우에는 공동참여 가능
 - ** 평가결과 선정기준에 미달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모빌리티혁신 지원형 전용)
- 기존에 수립된 마스터플랜 등 도시계획이 있어야 하며, 미래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이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는 지자체일 것
- ※ 기존에 수립한 마스터플랜 등 도시계획과 공모사업을 통해 수정·보완될 계획의 차별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모빌리티지원형)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 개발지역이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과 관련된 경우에는 공동참여 가능

3. 신청방법

○ 제 출 일 : 2023년 6월 12일 ~ 8월 4일 18:00까지

○ 제출장소 :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위탁기관)

○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제출내용	-공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공모신청서원본 1부 (직인날인) -사업계획서 15부 (각종 증빙 포함) -지방비 매칭 협약서 1부 -원본 파일(USB 또는 CD 저장)
제출방법	전자문서 (지자체장이 제출)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처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 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 304호 (강우진·이지원 연구원, 044-211-3164, 3151)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공모 안내서(별첨) 참고

5. 유의사항

○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 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각 1권으로 제출

【별첨】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 안내서

[별첨]

2023년도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 안내서

2023. 6.



국토교통부

목 차

I . 사업개요	1
II . 사업유형 및 지원사항	5
III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9
IV .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10
V . 제출서류 및 양식	16

I.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정부의 모빌리티 혁신 정책의지 및 관련 법적 기반 마련
 - 모빌리티 시대가 가져올 큰 변화*에 맞춰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제 대응 필요
 - * 수송(Transport)에서 모빌리티(Mobility) 시대로 전환, 획일적 노선·시간의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성 극대화
 - 모빌리티 로드맵 발표('22.11) 및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법 제정('23.10 시행)을 통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의 기반 마련
-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및 관련산업 육성 필요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시 차원에서 실현하여 국민의 모빌리티 혁신 속도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미래도시 구축
 - 첨단모빌리티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기술 및 산업 발전 촉진
- 도시 및 도로 공간구조 변화 등 미래 모빌리티 도시 대비 필요
 - 자율주행·UAM 등 새로운 이동수단과 서비스의 도입과 확산에 따라 도시부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수요 변화에 대응
 - 미래형 모빌리티 수단 도입시 공간수요(통행·주차·승하차 등)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선제적인 정합성 검토 필요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및 서비스에 특화된 다양한 시범도시 사업화를 통해 미래 도시교통 모델 제시·확산 유도

☞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가 융합될 수 있는 도시모델 구현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미래모빌리티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2] 추진 방향

- (개요)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되어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 자율주행, UAM, PM, 플랫폼(예. 공유차량, DRT), 허브센터 등

- (기본방향) 도시계획 시점부터 적용가능한 신규도시와 지역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존도시를 구분하여 지원대상 선정

- ① (신규도시) 도시계획단계부터 자율주행, UAM 등 새로운 모빌리티 공간수요가 반영된 미래형 도시 조성 지원 ⇨ 미래모빌리티도시형

-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모빌리티 수단 및 인프라를 전면 적용

- 다만, 개발계획 수립부터 지구착공 및 본격입주까지 장기간 소요*, 우선 조성 계획수립 지원^{1단계} → 향후 본사업 추진시 지원 검토^{2단계}

* 3기 신도시의 경우 ('21년) 지구계획수립 → ('23년) 지구착공 → ('27년) 입주 예정

- ② (기존도시) 지역 여건에 맞는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단계적 도입하여 이동성이 최적화된 도시로의 전환 지원 ⇨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 기 조성 도시에서 혁신 모빌리티를 위한 공간구조개편과 이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운영 사업지원으로 지역 교통문제 해결

< 공모계획 >

미래모빌리티도시형(신규도시)	모빌리티혁신 지원형(기존도시)
지자체 1개소 내외	지자체 2개소 내외
1년간 계획수립비 최대 7억(국비 100%)	개소 당 사업비 年10억, 최대 2년 지원 * 지방비 年 10억 매칭 필요(5:5)

- (추진계획) 공모사업 초기단계로 2년 간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5년부터 확대추진 및 시·도 권역별 핵심·지역거점 1개 이상 조성

□ 신규도시 조성안

○ (예시) 공유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중심 도시

- 도시 내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및 공유 모빌리티 등 신규 모빌리티 수단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율주행 도시환경 조성
- (수단) 우선 신호 처리 기반 Super-BRT, 수요 편차 대응형 분리·결합 및 군집주행 등이 가능한 모듈형 버스 등
- (인프라) 노면 표지, 차선, 교통 표지, 승/하차 승강장, 주차 시설, 충전시설, 전용차로 등
- (서비스) 공영주차장 내 주차로봇 도입 등



□ 기존도시 조성안

자율주행	■ 도심·관광지에서 대중교통버스, 셔틀버스 등 다양한 자율주행 수단이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전용도로 관련 인프라조성 등
PM	■ 공유 킥보드·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전용도로 설치, 거치대 등 주차공간 마련 등 관련 인프라 개선
플랫폼	■ 개인교통수단과 기존의 대중교통수단을 결합한 실시간 이동정보 기반 통합대중교통서비스(MaaS) 개발 등
허브센터	■ 철도·버스 뿐만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된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
DRT	■ 교통수요 밀도가 낮은 농어촌, 오지 운행에 적합하고, 수요자의 특성 및 요구에 반응하여 탄력적으로 운행 가능한 수요응답형 서비스 추진 등
디지털물류	■ 로봇 배송을 위한 로봇 보관 및 충전 인프라, 도로 및 보행자 공간의 구조적 변경, 도로 및 건물 내부의 정밀지도 등을 통해 로봇 배송 체계 구현 등

(4) 비전 및 목표

비 전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선도 도시 조성
목 표	1. 도시 여건에 부합하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거점 조성 2. 혁신 모빌리티 기반 도시 공간구조로의 전환 3. 모빌리티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추진 전략	추진 방안
도시 여건 맞춤형 모델 발굴	① (신규도시) 모빌리티 계획과 도시계획 간의 강력한 상호 연계 및 통합으로 모빌리티시티 구현 ② (기존도시) 도시 여건 및 교통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시행으로 모빌리티시티 단계적 조성
도시 공간구조 재편 추진	① (신규도시)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및 서비스에 적합한 도시 공간계획 및 도로 이용 구조 혁신 ② (기존도시) 기존 교통체계와 조화되는 혁신 모빌리티 인프라 단계적 구축과 이를 위한 공간구조 모델 실증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① (신규도시) 미래 모빌리티 기반 서비스 계획 및 운영을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 ② (기존도시) 기존산업과의 연계 등 단계적 생태계 전환을 위한 실용화 사업 중점 추진, 모빌리티 신기술 실증 및 실용화

Ⅱ. 세부 사업유형 및 유의사항

(1) 세부 사업유형

① 미래모빌리티도시형

- ☐ (지원목적) 첨단 모빌리티 수단의 전면 적용이 가능한 도시공간과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모빌리티 시티 조성을 지원
 - 모빌리티 특화에 필요한 공간구조 변화를 포함한 도시계획 수립(마스터플랜 등)을 시범적으로 지원하여 도시 조성 유도
- ☐ (지원대상)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 * 개발지역이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과 관련된 경우에는 공동참여 가능
 - ** 평가결과 선정기준에 미달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모빌리티혁신 지원형 전용)
 - 기존에 수립된 마스터플랜 등 도시계획이 있어야 하며, 미래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이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는 지자체일 것
 - ※ 기존에 수립한 마스터플랜 등 도시계획과 공모사업을 통해 수정·보완될 계획의 차별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추진체계) 지자체 주관, 사업시행자(LH 등) 및 기업·공공기관·지역대학 등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참여할 것
- ☐ (지원내용) 1개소 내외*, 1년간 계획수립비 최대 7억(국비 100%)
 - * 사업규모에 따라 배분하여 선정할 수 있음
 - 모빌리티지원센터(모빌리티법 제7조)와 연계하여 공모사업 종료 후 본사업 추진 지원 및 행정적, 재정적(재정당국 협의필요), 기술적 지원
 - 상용화 이전 단계의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실증 및 사업화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해소 지원

- 사업규모 상 지방비를 매칭할 필요가 있는 지자체는 공모신청시 지자체장이 직인한 '지방비 확보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절차) 사업제안 → 대상 지자체 선정 → 국토부·지자체간 사업 추진 협약체결 → 컨소시엄 구성 → 계획수립 → 계획수립 결과평가

- ① (사업제안) 사업지역 특정 및 조성방안 마련
- ② (대상 지자체 선정)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 지자체 선정
- ③ (사업추진 협약 체결) 국가지원 사항, 사업관리 방안, 성과모델 확산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자체간 협약 체결
- ④ (컨소시엄 구성) 지자체, 민간기업 등 참여주체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컨소시엄 구성
- ⑤ (사업추진) 국토부, 모빌리티 지원센터 등을 통해 계획 수립 과정 지원
- ⑥ (성과평가) 계획수립 결과 평가

2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 (지원목적) 지역 교통문제 등 도시여건에 맞게 특화된 첨단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하는 도시로 단계적 전환 및 확산 지원

□ (지원대상)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 개발지역이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과 관련된 경우에는 공동참여 가능

□ (추진체계) 지자체 주관, 기업·공공기관 등이 사업수행자 공동응모

□ (지원내용) 2개소 내외, 개소 당 국비 年 10억, 최대 2년

*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등을 위한 인프라, 서비스 구축, 실시계획 수립 비용 등

- 지자체는 **국비와 동일규모 이상**의 지방비를 매칭하여야 하며, 공모신청시 지자체장이 직인한 ‘지방비 확보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빌리티지원센터(모빌리티법 제7조)와 연계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 지원
- 상용화 이전 단계의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실증 및 사업화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해소 지원
- 다만, 해당 사업지구에 동일·유사한 서비스 추진 계획이 既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국비사용 불가

□ (사업절차) 사업제안 → 대상 지자체 선정 → 국토부·지자체간 사업 추진 협약체결 → 컨소시엄 구성 →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 사업 시행 성과평가

- ① (사업제안) 사업지역 특정 및 조성계획 마련
- ② (대상 지자체 선정)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 지자체 선정
- ③ (사업추진 협약 체결) 국가지원 사항, 사업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자체간 협약 체결
- ④ (컨소시엄 구성) 지자체, 민간기업 등 참여주체간 역할(채원조달, 모빌리티 수단운영 등)을 명확히하여 컨소시엄 구성
- ⑤ (사업추진) 국토부, 모빌리티 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 지원 및 모니터링
- ⑥ (성과평가) 사업시행 결과 평가 후 우수 사업 선정

[2] 유의사항

- (지속운영의무)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의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업 완료 이후 2년 이상의 운영 의무 부여(지자체와 협약 체결)
- (면적요건) 지역마다 도시여건이 다를 것을 감안하여 사업면적 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
- (차별성) 동일한 혹은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으면 이를 명시해야 하며, 기 국비지원 사업과의 차별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함
- (제외 대상)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중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자체는 응모 불가
- (예산) 지자체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성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국비 지원 금액이 감액 등 조치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및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등 법령에 따라 보조금 사용이 불가능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되어 사용한 경우 환수조치 예정
- (갈등관리) 공모 신청시 사업에 대한 이해충돌, 이견대립 요소를 명확히 밝혀야 함(사전에 밝히지 않은 경우 선정취소 가능)
 - 갈등의 존재여부, 갈등의 심각성, 지자체 갈등해소 방안 및 노력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Ⅲ. 신청방법

- ☐ (제출일) 2023년 6월 12일 ~ 8월 4일 18:00까지
- ☐ (제출장소)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위탁기관)
- ☐ (제출방법)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제출내용	-공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공모신청서 원본 1부 (직인날인) -사업계획서 15부 (각종 증빙 포함) -지방비 매칭 협약서 1부 -원본 파일(USB 또는 CD 저장)
제출방법	전자문서 (지자체장이 제출)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처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 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 304호 (강우진·이지원 연구원, 044-211-3164, 3151)

☐ 유의사항

-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 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각 1권으로 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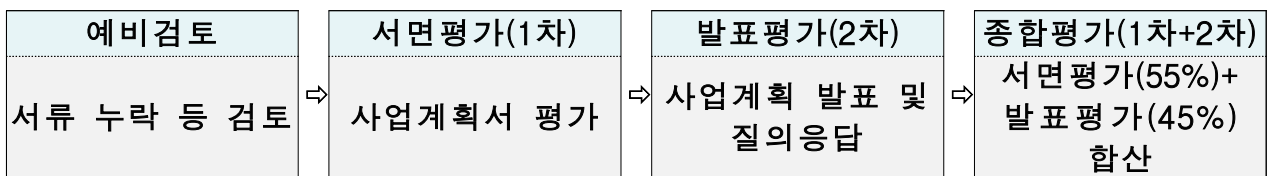
Ⅳ.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1]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 학회·공공기관·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중 10명 이내로 구성
(위원 명단 비공개)

□ 평가절차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 평가방법(안)>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실시
 - * 서면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규모의 최대 3배수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발표평가)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 (종합평가) 서면평가(55%)와 발표평가(45%)를 거쳐 최종 선정
 - * 최고·최저 평가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선정 제외대상 >

- ▶ 평가와 관련하여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 부정행위 :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2] 평가기준

□ 미래모빌리티도시형(안)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서면 평가 (55%)	사업추진의 타당성	10	• 대상지의 지역/공간적 특성 및 여건 분석에 따른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가능성(5점) • 사업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5점)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혁신성	50	• 도시 및 모빌리티 공간계획(10점) • 모빌리티 수단, 인프라, 서비스 계획(15점) - 타 (신)도시 교통 및 모빌리티와의 차별성 등 제시 • 비즈니스 모델 등 도시 조성후 지속방안(15점) • 모빌리티 서비스 연계통합계획(10점)
	추진체계의 적정성	30	• 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8점) • 재원조달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8점) • 참여자별 역할분담, 사업추진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14점)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10	• 성과목표(KPI)의 적정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점)
발표 평가 (45%)	사업 추진의지	45	• 대상지 여건 및 추진 역량의 우수성(15점) • 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전략의 우수성(15점) •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15점)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55	• 사업의 실현가능성(16점) • 사업의 창의성·우수성 및 지속가능성(17점) • 사업 관리방안의 적정성(12점) • 관련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10점)

□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안)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서면 평가 (55%)	사업추진의 타당성	20	• 대상지의 지역/공간적 특성 및 여건 분석에 따른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가능성(10점) • 사업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10점)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혁신성	30	• 모빌리티 공간, 수단, 인프라, 서비스 계획(15점) • 비즈니스 모델 등 사업종료 후 지속방안(7점) • 모빌리티 서비스 연계통합계획(8점) - 기존 교통사업과의 상생 방안 포함
	추진체계의 적정성	30	• 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8점) • 재원조달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10점) - 사업기간 종료 후 의무운영기간 포함 • 참여자별 업무 및 역할분담, 시민참여,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이해관계자 갈등 관리 등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 (12점)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20	• 성과목표(KPI)의 적정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8점) • 도시교통 문제 해결 등 기대효과(12점)
발표 평가 (45%)	사업 추진의지	45	• 대상지 여건 및 추진 역량의 우수성(18점) • 목표의 적절성,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계획 및 전략의 구체성(12점) •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15점)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55	• 사업의 실현가능성(20점) • 사업의 창의성·우수성 및 지속가능성(15점) • 성과 달성을 위한 사업 관리방안의 타당성(10점) • 관련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10점)

※ 본 공모지침서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협의를 통해 적용여부 판단

참고1

공모 사업추진 일정(안)

* 사정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전설명회	'23.6	· 공모안에 대한 사전설명	국토부 → 지자체
↓			
사업 공모	'23.6	· 공모 공고	국토부 → 지자체
↓			
사업발굴·신청	~'23.8	· 지자체 : 신청 관련 서류 작성·제출 - 신청서, 사업계획(안) 등 제출 필수 자료	지자체 → 국토부
↓			
공모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23. 8	· 구성요건 : 공공기관, 학회, 연구원 등 추천 및 전문분야·지역 고려	국토부/ 위탁기관
↓			
사업 선정	'23. 8	· 지원제외대상, 서류 누락여부 검토 · 평가대상사업 확정	위탁기관
		·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수행 · 후보 사업지 선정	위탁기관
		· 사업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 지원대상 사업지 확정	위탁기관
↓			
선정결과 통보	'23. 8	·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국토부 → 시·군

Q. 모빌리티의 의미는?

A. 모빌리티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의미함

Q.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 시, 향후 본사업비 지원 여부

A. 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국비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본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

Q. 모빌리티혁신지원형 사업 대상 모빌리티 범위는?

A. 모빌리티법 제2조 제1호부터 제7호 등을 고려하여 취지에 부합하는 기술이면 예시에 없더라도 가능, 공모지침서의 예시 중 하나 또는 여러 유형을 연계해도 되며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필요

- 현재 해당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규 미비 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청 등 추진방안에 대한 계획 제시가 필요하며, 사업기간 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선정되지 않음

Q. 모빌리티혁신지원형(기존도시) 선정되어 사업이 완료된 후 2년 이상의 운영의무 이행 시, 추가 국비 지원 여부

A. 국비지원 없음. 따라서 공모평가 시 사업의 지속가능성도 주요한 판단요소임

Q. 광역·개별 교통수단간의 연계성이 선정시 주요 판단요소인지

A. 주요 판단요소임.

Q.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국비는 어떠한 형태로 지원되는지?

A. 가능하나, 컨소시엄 체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평가 시 판단될 예정

- 다만, 광역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초지자체의 공동응모 시, 광역지자체가 공모사업의 주관이 되고 지방비 매칭의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Q. 동일·유사한 타 공모사업의 범위는?

A. 국비지원을 받은 경우는 모두 포함. 유사여부는 평가 시 판단예정.

Q. 컨소시엄은 구성 시한은?

A. 미리 선정·구성(협약)하여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선정 전·후 즈음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인정가능

Q. 공모신청 시, 발표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지?

A. 발표자료는 서면평가에 선정된 지자체만 제출하면 되고, 발표 대상여부는 서면평가 완료 후 별도 통보될 예정

Q. 모빌리티 구입비용, 인건비, 서비스 운영비 등에 사용해도 되는지?

A.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의 경우 지자체 경상보조, 모빌리티혁신지원형의 경우는 지자체 자본보조*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판단된 필요.

* 자본보조금은 단순 인건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

Q. 사업종료 후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

A. 사업 종료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제출필요(협약에 따라 연장가능)

V. 제출서류 및 양식

양식 1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신청서

공 모 신 청 서

신청인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시장, 군수)					
책임자	○○실·국 ○○과장 ○○○(☎000-000-0000)					
담당자	사무관 ○○○ (☎000-000-0000, ooo@korea.kr)					
	주무관 ○○○ (☎000-000-0000, ooo@korea.kr)					
신청 사업	사업명	○○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사업유형	미래모빌리티도시형 또는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사업위치	○○시 ○○동 일원				
	사업면적	000,000㎡				
	사업기간	국비 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작성				
	사업방향	해당 지역의 모빌리티 특화도시 컨셉 작성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잘 드러나도록 3줄 이내로 요약				
	사업비 (억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중전 개발사업시행자	민간투자
참여기관 등	지자체, 개발사업시행자, 민간기업 기관명칭과 대표자명 명시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각 15부 2. 개발사업시행자, 민간기업의 참여의사 확인 관련 자료 각 1부 3. 파일 원본(USB, CD 등) 1부					

위와 같이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응모합니다.

2023년 8월 일

○○시장 ○ ○ ○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공 모 신 청 용

○○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사업계획서(안)

2023. 6.

○○시·군

2023년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요약서

※ 4쪽 이내로 작성,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1쪽) 참고 첨부

지자체명	○ ○ 시	참여기관 등	모든기관 명시
사업명칭	○ ○ 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부제 : 해당지역의 특화브랜드명)		
사업개요	▪ 사업대상지 개요		
사업 필요성	▪ 대상지 여건 검토 ▪ 특화도시 비전 ▪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사업계획	▪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간계획 ▪ 모빌리티 수단,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운영계획 ▪ 비즈니스 모델 도입 등 서비스 지속방안 ▪ 모빌리티 서비스 연계통합 계획		
추진체계	▪ 단계별 추진 계획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참여주체간 업무 및 역할분담,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 ▪ 민간기업의 투자계획 및 지속가능한 참여방안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작성 담당자	▪ ○ ○ 시·군 ○ ○ ○ 실·국 ○ ○ ○ 과 (정) ○ ○ 담당 직급 성명 (044-000-0000, abc@korea.kr) (부) ○ ○ 담당자 직급 성명 (044-000-0000, def@korea.kr)		

목 차

I. 사업개요 ...	1
1. 사업명	0
2. 사업 대상지 개요	00

[별첨]

1. ○ ○ ○ ○	00
------------------	----

작 성 안 내

-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표지, 공모신청서(사본), 요약서(4쪽 이내), 목차, 본문(40쪽 이내) 및 참고자료(분량제한 없음),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A4 세로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 * 링·스프링 제본 지양
- (요약서) 주요 평가항목과 지표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4쪽 이내로 작성하되,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1쪽) 참고 첨부
- (본문) 본문은 A4 40쪽 이내로 하며, 참고·증빙자료를 첨부하되, 순서에 따라 별첨
 - 본문 구성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
 -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는 핵심사항 위주로 첨부하고, 위치를 본문에 표시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mm,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mm로 설정
 -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 기준 줄 간격 160%
 - 작성양식의 이탤릭체(파란색)는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 전체 사업계획도를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첨부하며,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
 - 해당 지역의 현황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 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다른 지역 사진은 사용 지양
- (발표자료) PPT 20쪽 이내로 작성
 - 양식 자율, 글꼴은 기본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목차 구성(안)

1. 사업 개요

- 1.1 사업명
- 1.2 사업 대상지 개요

2.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 2.1 대상지 여건 및 교통문제 도출
- 2.2 모빌리티 특화도시 비전
- 2.3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 2.4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연계성

3. 사업계획

- 3.1. 특화도시 공간구상
- 3.2. 모빌리티 수단,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운영계획
- 3.3. 비즈니스 모델 도입 등 서비스 지속방안
- 3.4. 모빌리티 서비스 연계통합 계획

4. 추진체계

- 4.1 단계별 추진 계획
- 4.2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 4.3 참여자간 역할 분담 계획
- 4.4.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 4.5. 민간기업의 투자계획 및 지속가능한 참여방안

5.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5.1 성과목표(KPI)
- 5.2 기대효과

목 차 별 작 성 요 령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 00 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부제 :)

1.2 사업 대상지 개요

※ 사업위치 : 1) 법정/행정동 구분 입력, 2) 대표지번(도로명)은 사업면적의 한가운데
에 해당하는 지번(도로명) 또는 핵심시설이 위치하는 지번(도로명) 등

※ 사업면적 : 00,000 m²

※ 사업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

※ 대상지 유형 : 신규 또는 재개발 지구, 기존도시 등 유형을 표기, (재)개발 지구의 경우 종전 사업유형도 같이 표기(예, 00지구 도시개발, 택지개발 등)

※ 사업위치도 : 사업위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 시도에서 시군구의 위치, 2) 시군구에서 대상지역의 위치, 3) 행정동에서 대상지역의 위치(경계)를 지도에 표기

※ 내용을 서술한 후 아래 표 형식을 활용하여 정리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칭	00 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사 업 위 치	00시 00구 00동 00도로 일원
사 업 면 적	00,000㎡
사 업 기 간	0000년. 0월 ~ 0000년. 0월
대상지 유형	신규개발(00지구 도시개발)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위 치 도 1>

<위 치 도 2>

2.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2.1 대상지 여건 검토

※ 대상지·교통 여건

- 대상지 입지, 지형, 토지이용현황, 도로망 등 교통기반시설 구성 등 도시의 물리적 여건을 기재
- 인구구성, 교통 및 모빌리티 수요 특성 분석
- 계획 중인 신도시와 같이 현재 데이터가 없는 경우 계획 또는 예측치를 기재

※ 도시교통 문제 및 해결 방향 도출

- 도시의 현 도시교통 문제(또는 특성) 혹은 잠재적 문제들과 해결 방향 도출(데이터 분석, 설문 조사 등 활용)
(예) 교통기반시설 구성에 비해 승용차 분담율이 과도해 첨두시 평균통행속도 00km/h 수준의 혼잡 상시 발생 => 자전거, PM 등으로 전환 필요
- 도출된 도시교통 문제 및 해결방향은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모빌리티 혁신 방안과 연계 필요
- 계획 중인 신도시의 경우 도시계획내용을 바탕으로 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교통·모빌리티 구축 방향 제시

2.2 모빌리티 특화도시 비전

※ 신규조성도시의 경우 도시의 모빌리티 미래상 제시

- ※ 기존 도시의 경우 해결 또는 발전시키고자 하는 도시교통 문제나 교통특성과 관련해 모빌리티 특화도시 사업의 비전과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 기술
- 대상지 여건, 교통 특성 등을 고려해 해당 도시에 적합한 특화도시 추진방향 제시
(예) 공유형 자율주행 중심 도시, 자전거·PM 모빌리티 도시 등

2.3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 사업의 목표

- 대상지 여건, 교통문제의 특성 등을 바탕으로 모빌리티 특화도시 사업의 목표 설정

※ 추진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제시

2.4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연계성

※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기술

- 도시교통정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연계성 기술
- 첨단모빌리티 실증 또는 시범사업 등이 기추진되었거나 시행 중 혹은 추진 예정인 경우, 사업개요 및 내용 등(정부지원 사항 포함)을 기술하고 모빌리티 특화도시 사업과의 연관성 및 연계 방안 기술

3. 사업계획

3.1. 모빌리티 공간구상

※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특화도시 추진방향 등을 고려해 특화된 공간계획을 제시

- 신규 조성도시의 경우 교통 및 모빌리티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도시 모빌리티 특성을 고려한 도시공간 활용 계획, 자율주행셔틀 노선 등 모빌리티 운행 공간 계획, 지상·지하 등 입체적 활용계획 등 다양하게 제시 가능
- 기존도시의 경우 모빌리티 수단 및 서비스가 배치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 공간에 대한 계획, 모빌리티 공간계획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변경되는 도시공간 및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등 제시
- 공간계획은 모빌리티 수단, 인프라, 서비스 등 사업계획 내용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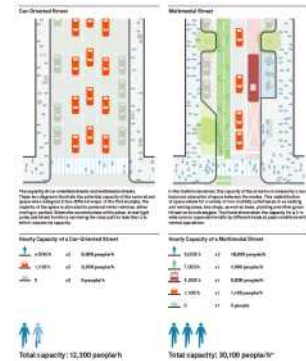
< 참고 : 공간계획 특화 방안 예시 >

1. 세종 국가시범도시

- 혁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의적 인재 및 기업을 유도할 수 있는 용도혼합, 자동차 없는 도시구조 등 혁신적 공간계획 수립
- 용도혼합 계획 : 동일한 토지에 대한 다양한 용도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상업·산업의 유연한 용도혼합 도시계획 실현
- 차 없는 도시구조 : 생활권 주요골격인 순환링에 자율주행셔틀을 적용하고, BRT와 공유차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 기능 강화



- 모빌리티와 도시공간 변화의 기본방향 설정을 통한 혁신 공간 조성
 - 모빌리티 다양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한 도로공간 재편
 - 이동 및 접근성의 변화에 따른 기존 도시공간 구조 및 인프라에 대한 효율화



3.2. 모빌리티 수단,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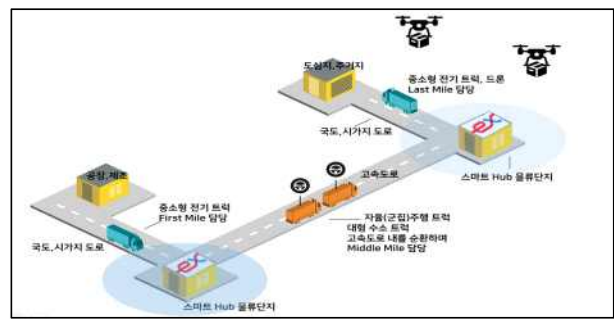
- 대상지역의 특성, 교통문제 등에 부합하는 모빌리티 수단, 인프라 등 도출
- 도시교통문제 해결,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운영 계획 도출

- 도입하고자 하는 모빌리티 수단의 제원, 운행 특성, 도입 방안 등 기술(그림 등 포함, 도입 수단이 여러 개일 경우 각각 기술)

- 모빌리티 공간 계획상의 운행 범위(운행 경로, 정류장, 충전기, 주차장 등 운행에 요구되는 시설의 위치 포함), 활용방안 제시

- 구축하고자 하는 모빌리티 인프라(전용도로, 환승허브 등)의 특성에 따라 기술(그림 등 포함, 도입 인프라가 여러 개일 경우 각각 기술)
- 모빌리티 공간 계획상의 위치, 도입 목적, 활용 방안 등 기술

○ 모빌리티 환승거점(복합휴게소), 첨단물류 허브(고속도로망) 등 모빌리티 혁신 거점조성



※ 모빌리티 서비스 계획

- 모빌리티 서비스 계획을 모빌리티 공간 계획상에서 수단 및 인프라 특성에 맞게 그림 등을 활용해 구체적으로 제시(서비스 정의, 주요 내용, 서비스 시나리오, 주 서비스 대상, 서비스 시간 등 운영계획,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슈 및 대응책 등)
- 서비스 계획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 각 단계의 목적, 단계별 서비스 계획 및 차별성 등 기술

< 참고 : 수요응답형 서비스 활용'22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예시 >

- (활용사례) 생활권 외 이동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실시간 이동 수요 분석 기반의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참고 :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예시 >

○ 도심 교통 혁신을 위한 AI 기반 교통 플랫폼 조성



<AI기반 교통 센터 플랫폼 예시>



<플랫폼 활용방안 예시>

< 참고 : 서비스 시나리오 예시 >

○ 부산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 교통약자 승차공유플랫폼 서비스



<교통약자 승차공유플랫폼 서비스 시나리오 예시>

※ 모빌리티 서비스 실현에 대한 장애요인 및 해결 방안 제시

- 신규 모빌리티 운행관련 규제 현황 및 규제샌드박스 등 해결 방안
- 지자체의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자체적 지원 방안, 규제 완화 노력 등 제시

※ 도입 모빌리티 기술의 특·장점과 혁신성 제시

- 타 교통 또는 모빌리티 대비 상대적 우수성, 혁신성을 이용자 서비스 측면, 비용 측면, 대상 지역에서의 적합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3.3. 비즈니스 모델 도입 등 서비스 지속방안

- ※ 특화도시 사업종료 후에도 구축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지속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공공서비스 구축후 민간기업에 위탁운영, 수익형 민간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도입 방안 제시
 - 민간의 참여 의사,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 등 세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모빌리티 서비스의 수익성 확보방안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 제시

3.4. 모빌리티 서비스 연계통합 계획

- ※ 모빌리티 연계 및 통합화 방안
 - 혁신 모빌리티 간, 혁신 모빌리티와 기존 교통과의 연계, 통합화 방안 제시
- ※ 모빌리티 서비스 실현에 대한 장애요인 및 해결 방안 제시
 - 기존 민간 교통 사업자와의 갈등 등 사업추진 및 지속의 장애요인 도출
 - 협의기구 구성, 지자체 지원 등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4. 추진체계

4.1. 단계별 추진계획

- ※ 사업 추진 단계의 설정
 - 준비단계, 본사업단계, 사업종료 이후 운영·관리단계 등 최소한 3단계로 구성
 - 본사업 단계는 필요 시 2개 이상의 세부 단계로 나누어 구체화 가능
- ※ 각 단계의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방안을 기술
 - 각 추진 단계별로 주요 사업 내용, 주요 장애요인, 추진 절차, 주요 참여자 및 역할, 추진 방안, 소요시간 등 세부적으로 기술

4.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및 사업 수행 주체별, 연도별, 사업별로 재원조달계획(예산 집행계획 포함)에 대해 표 등을 활용하여 제시
- ※ 민간의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 민간투자 촉진방안, 투자의향서 및 투자협약서 등 증빙자료로 제시

< 참고 1 : 사업비 내역 양식 >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집행계획
				계	국비	지방비	시행자	민간*	'23
합 계(①~④)				0	0	0	0	0	0
소 계(①)				0	0	0	0	0	0
계 획 수립		-	00 ~ 00	-	-	-	-	-	-
소 계(②)									
주요 서비스		-	00 ~ 00	-	-	-	-	-	-
소 계(③)									
사업 지원		-	00 ~ 00	-	-	-	-	-	-

< 참고 2 : 비목별 내역 양식>

(단위 : 백만원)

비목별 예산계획					
비목별	사업 기간	국비	지방비	민간	총 사업비
인건비	00 ~ 00				
운영비	00 ~ 00				
외주 용역비	00 ~ 00				
..					

4.3. 참여자별 역할 분담 계획

※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주체별 역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추진주체별 역할 예시>

정부	▶ 대상지 선정 및 재정·행정·기술 지원
지자체	▶ 사업 주관, 사업비 매칭, 공공서비스 구축·운영 및 인프라 구축 ▶ 사업 추진관련 협의체 운영, 지자체 규제 완화 등
개발사업시행자	▶ 부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자금투자 등
민간기업	▶ 사업비 투자, 민간서비스 구축·운영, 공공서비스 위탁운영 등
연구기관, 대학	▶ 신기술 실증 및 평가

4.4.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 모빌리티 특화도시 사업추진 조직 및 협력 거버넌스(사업 추진협의회, 주민협의체 등) 구성·운영방안 제시(방침문서, 운영계획서, 관련 MOU 등 증빙자료로 제출)

※ 문제 발굴, 계획 수립, 구축·운영, 확산 등 사업 단계별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방안 제시

4.5. 민간기업의 투자계획 및 지속가능한 참여방안

※ 사업공모 준비단계에 민간참여 컨소시엄 구성사를 선정 또는 협약을 통해 기 구성한 경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민간기업의 서비스 단계별(구축 및 운영·관리) 투자계획 및 지속가능한 참여방안(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의 고도화 및 신규 서비스 발굴 등을 위한 재투자 계획 등) 제시

☞ 민간의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 투자 협약서 등 증빙자료로 제출

※ 민간기업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민간기업 참여방안, 선정 시 민간기업 공모계획을 제시

5.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5.1. 성과목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성과목표를 기술

(예) 일평균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건수, 서비스 재이용율 등 사업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정

5.2. 기대 효과

※ 도시교통 문제 해결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정성적, 정량적 기대효과 제시)

(예) 주요지점간 통행시간 감소, 혼잡구간 및 시간대 감소 등 도시 및 도시교통문제와 관련해 기대되는 효과를 기술

지방비 매칭 확약서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지방비 매칭 확약서

우리 000시·군에서 제출하는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이 귀 부의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될 경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동 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안) 등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방비 매칭금액	기 한	비 고

2023년 8월 00일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명)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